##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2절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에 있어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작업 중 기계운전과 근접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4. 기계운전과 근접작업

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, 근접작업 근로자, 관리감독자등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4.1 기계운전자의 준수사항

(1) 기계는 작업전에 모두 정비하고 운전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2) 기계의 후진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현장의 상황, 통행차량현황, 부근작업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험개소의 유무와 위급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.
- (4)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, 좌우 양측 2m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급하게 전 후진 및 급선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비탈길 등의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 등을 피하며, 반드시 제동 확인후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되,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휀스 또는 차량유도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### 4.2 근접작업 근로자의 준수사항

- (1) 기계의 주행작업중에는 기계의 작업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의 성질상 근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방법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3)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(4)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고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#### 4.3 관리감독자의 준수사항

- (1) 기계 주행작업중에는 그 작업 범위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부득이하게 근접작업이 필요한 때에는, 근로자에게 근접작업시 필요한 주의와 작업방법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.

- (3) 유도자를 배치하여 호각 또는 수신호등의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해 근로자의 대피 및 기계 후진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현장내에서 기계의 운전작업 또는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행로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.

## 5. 건설기계의 유도신호

### 5.1 유도신호

### (1) 유도자의 배치

포장공사시 <표 1>에 예시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히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<표 1> 기종에 따른 유도원 배치 작업

기 종	작 업	적 용
아스팔트피니셔	아스팔트 혼합재 깔기	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호퍼에 혼합 재를 투입 공급하는 경우
타 이 어 로울러	전압	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
머 캐 덤 로울러	전압	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
탠 덤 로울러	전압	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
디스트리뷰터	살포	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
덤 프 트 럭	운반	후진하는 경우

### (2) 유도자의 주의사항

- (가) 유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해 기계 및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.
- (나) 유도자는 유도되는 기계 및 차량의 적절한 주행속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운행경 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(3) 유도 신호방법

- (가) 유도신호는 호각과 수신호를 병용한다.
- (나) 야간작업시 유도자는 신호수용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전자신호봉 또는 깃발을 손에 들고 유도하여야 한다.
- (다)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여 해당장비에 유도신호를 하여 야 한다.
  - ① 운전자와 연락신호가 잘 되는 곳
  - ② 근로자, 기타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
  - ③ 기계, 차량의 진행선으로부터 떨어진 장소
  - ④ 유도되는 기계,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보이는 장소
- (라) 기계, 차량을 후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기계, 차량으로부터  $5\sim10$ m의 거리를 유지하여 해당 차량을 유도 하여야한 다.
  - ② 유도자는 안전한 위치에서 기계·차량의 후진경로에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도하여야 한다.
- (마) 신호는 <그림 1>의 표준유도 신호방법에 따라 절도있게 큰동작, 큰소리로 분명히 해야 한다.

구분	신호	호각 신호	수 신 호	구분	신호	호각 신호	수 신 호
1	안 전	   ##]   ##]		5	후 진	   HB] 	+
2	멈	HH]	+	6	아 댁	нн]	+ T
3	긴 급 정 지	         ##]	*	7	좌로	н)	+
4	전 진	   HI]	+				

## <그림 1> 표준유도 신호방법

※ 호각부는 방법 : —— 아주길게, — —— 짧게-길게, — — 짧게

(주) 1) 한손을 들어 손바닥을 진행방향으로 펴고 전후로 손을 흔든다.

- 2) 한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운전자를 향해 높이 올린다.
- 3) 양손을 벌리고 높이 들어 좌우로 크게 흔든다.
- 4) 양손을 위로 올려 손바닥을 뒤로가게하여 전후로 흔든다.
- 5) 양손을 위로 올려 손바닥을 앞쪽으로 하고 전후로 흔든다.
- 6) 오른손을 위로 올려 옆으로 흔든다.
- 7) 왼손을 위로 올려 옆으로 흔든다.

### 5.2 근접작업에 있어서의 유도신호

(1) 아스팔트피니셔 포설작업시 주의사항

아스팔트 포장재료를 포설할 경우에 덤프트럭은 후진하며 적재되어 있는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게 되고, 피니셔는 전진하면서 포설작업을 한다.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작업 근접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가)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니셔 호퍼 부근 혹은 그 전방 5~10m 사이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유도신호를 하도록 한다.
- (나) 피니셔의 운전자와 유도자는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는 현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하여야 한다.
- (라)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.
- (2) 아스팔트 포설후 로울러 전압작업시 주의사항

아스팔트 포설후 머캐덤 로울러등의 다짐기계가 피니셔의 뒤에서 바로 전압작업을 실시한다. 포설과 전압을 실시함에 있어서 마무리공 및 다른 근로자가 피니셔와 로울러 사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가) 로울러와 피니셔와의 근접거리는 최소 1m이상으로 한다. 또 마무리공은 로 울러와의 거리를 2~3m이상 유지해야 한다.
- (나)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.
- (다) 로울러 운전자는 마무리 작업시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.
- (라) 로울러 운전자는 동절기 한냉 포장작업시 로울러에서 살수되는 물이 아스팔트의 고열에 의해 수증기가 발생할 경우, 근로자의 시야를 가릴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.